



제 420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권 강화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833호)

2025. 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권 강화(안 제107조)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11. 25.

다. 회 부 일: 2024.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자의 권리 보호 향상을 위해 저작물 이용자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급격한 저작물 이용 증가와 저작권 인식 부족 등으로 저작자 개인의 저작권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이라 규정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 저작물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징수해 저작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도 주요 업무인데, 분배에 필요한 서류 열람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작자들이 저작물에 대해 합당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 시에도 자료 열람 청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현행 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자는 서류 열람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악용한 이용자들이 기초 자료 열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등의 사용료 산정뿐 아니라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에 필요한 서류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서류 열람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안 제107조). 저작물 등의 정확한 사용료 산정과 분배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Ⅲ. 검토의견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권 강화(안 제107조)

가. 개정안 요지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등 사용료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외에 사용료의 ‘분배’에 필요한 서류도 이용자에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7조 전단).
- 이용자가 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7조 후단).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u>정당한</u>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따라야 한다.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 ----- ----- ----- <u>산정 및 분배</u>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 -----.

다. 검토사항

-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현행법 제2조제26호),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신탁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해당 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분배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07조¹⁾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위 청구권은 현행법상 사용료의 ‘산정’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사용료의 ‘분배’에 필요한 서류열람은 청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바, 그로 인하여 신탁관리업자들이 각 이용자들의 자료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정확한 분배 비율 산정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아래와 같이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1) 「저작권법」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따라야 한다.

-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서도 이를 악용하는 이용자들이 신탁관리업자의 기초자료 열람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사용료의 ‘분배’에 필요한 서류도 이용자에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가 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저작물의 정확한 사용료 산정·분배 관련 자료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용료 ‘산정’은 이용자가 제출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이용자와 신탁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업무임에 반해, 사용료 ‘분배’는 회원에 대한 신탁단체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이용자에게 ‘분배’ 목적의 서류열람까지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료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까지도 서류열람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사용료 분배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는 신탁단체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국내·외 관행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현재 대부분의 방송사·OTT 등 이용자들이 음악사용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저작권료의 산정 및 분배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반면,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는 이용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개정안과 같이 서류 열람 청구권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미 신탁관리업자 등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탁관리업자가 과도한 자료 제출을 강요하게 될 우려가 있고,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내용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종합하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서류열람 청구권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보다 정확한 사용료 분배를 위하여 신탁관리업자의 자료 확보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른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개정안은 과도한 권한을 신탁관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각종 방송 관련

협회 등의 반대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376